

#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8
----------	-----

제출년월일 : 1997.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도 여성회관 청사이전후 시군여성회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도 전체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 실시
- 지방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시설사용료 대여사업 및 위탁교육비 신설
- 21세기를 향한 여성의 역할증대와 여성전문기능인 양성을 통한 건전사회 생활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 도모

## □ 주요골자

- 제1조 (설치) 영세여성 자립기반 조성 → 지역여성 능력 개발과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장 활용
- 제2조 (위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46 → 청주시상당구 지북동 355-17
- 제3조 (업무)
  1. 여성기술인력양성  
→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 조성
  2. 여성교양강좌 및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
  3. 여성의 신상상담 및 직업보도  
→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위탁교육실시
  4. 부녀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5.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여성기술인력 양성
  6. 각종시설물 대여사업
  7.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 ○ 제6조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 수강료 기술교육 3,000원 → 10,000원

기타교육 5,000 "

전문교육 신설 → 1인 1주(4시간) 20,000원  
2주(8 " ) 30,000 "

## - 위탁교육비 신설

## □ 의안전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설치) 지역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회관 (이하 “여성회관”이라한다)을 둔다

제2조 (위치) 여성회관은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17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여성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2.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
3.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위탁교육 실시
4. 여성 정보자료실 운영
5. 여성기술 인력 양성
6. 각종 시설물 대여사업
7.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4조 (관장)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여성회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설물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술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여성회관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와 기술교육, 전문교육 시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와 수강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기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시설사용의 경우 부득이 사용자가 형편에 의거 날짜와 시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강당, 강의실 및 기타 시설물의 사용료와 기술교육의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시

3.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 모자세대

② 전문교육의 수강료 면제는 도 여성회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에 한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동일기관 · 단체에 대하여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제8조 (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9조 (위탁교육)** ①관장은 각급 공공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등에서 요구하는 과목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 할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교육신청은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요금을 징수한다.

**제10조 (강사초빙)** ①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계	계장	관장	결
재			

1. 시설명	대강당, 강의실, 예절실		
2. 사용일시	19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3. 사용예정인원	명	4. 사용목적	

### 5.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

주소		단체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전화	

### 6. 사용자 납부

사용료	“수입증지” 원	
-----	----------	--

19 년 월 일

신청자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여성회관장 귀하

## 시설물 사용허가 승인서

1. 시설명 :

2. 사용일시 :

사용료	원	특기사항	도 수입증지 납부
-----	---	------	-----------

위와같이 대강당, 강의실, 예절실 사용을 허가합니다.

19 년 월 일

충청북도여성회관장

직인

신청인 귀하

(별표 1)

## 시 설 사 용 료

대상시설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 매시간 초과마다 기준요금의 20%가산
강 의 실	"	20,000 "	· 토.일.공휴일 및 야간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예 절 실	"	30,000 "	· 냉·난방비 사용시 요금별도 징수

## ※ 냉·난방비

- 대강당 (1회, 2시간) 30,000원
- 강의실 ( " ) 20,000 "      2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의 20% 가산
- 예절실 ( " ) 20,000 "      20% 가산

(별표 2)

## 수 강 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교육	1인, 1월	10,000원	· 영세모자세대, 영세민 면제 · 교육과정(기간)별 수강료 일시불로 선납
전문교육 과 정	1인 1주(4시간) 2주(8 " )	20,000원 30,000 "	· 여성회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은 수강료 면제

(별표 3)

## 위 탁 교 육 비

구 分	기준 (1인당)	금 액		비 고
		단 체	개 인	
교육비	1주 ( 8시간)	30~50천원	40~50천원	· 단체 : 30인 이상
	2주 (12 " )	50~70 "	60~70 "	· 시설사용료, 교재비,
	3주 (18 " )	70~90 "	80~90 "	강사료, 식비포함

(별지 제2호서식)

# 수강신청서

사진  
(3×4m)

제호

과목		과제기		초급	중급
결	한글				
재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최종학력				학과	
세대주		관계	전화번호		
가족사항					
성명	관계	년령	직업	비고	
초급과정이수 대조필 확인 / 인					

신청일자 : 19 . . .

성명 : (인)

충청북도여성회관장 귀하  
제호

## 접수증

지원자 : 과목 : 과제기

1. 개강년월일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충청북도여성회관장  직인

취급자  (인)

(별지 제3호서식)

## 위탁교육 허가신청서

계	계장	관장	결재

1. 교육과목	
2. 교육일시	19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3. 교육인원	

### 4.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

주 소		단체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전화	

### 5. 사용자 납부

사용료	원	특기사항	식사비 : 기본, 별도	별도식사비	원
-----	---	------	--------------	-------	---

19 년 월 일

신청자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여성회관장 귀하

## 위탁교육 허가 승인서

1. 시설명 :

2. 사용일시 :

사용료	원	식사비 : 기본, 별도	별도식비	원
-----	---	--------------	------	---

위와같이 위탁교육 신청을 허가합니다.

19 년 월 일

충청북도여성회관장  직인

신청인 귀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설치) 부녀자의 복지증진과 영세근로 여성의 경제적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1조 (설치) 지역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을 활용하기위하여 충청북도 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위치) 여성회관은 청주시 북문로 2가 116번지에 둔다.	제2조 (위치) 여성회관은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17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여성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기술 인력 양성 2. 여성교양 강좌 및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3. 여성의 신상상담 및 직업보도 4. 부녀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5.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3조 (업무) 여성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2.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 3.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위탁교육 실시 4. 여성 정보자료실 운영 5. 여성기술 인력 양성 6. 각종 시설물 대여사업 7.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제4조 (관장) ①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도감독한다.	제4조 (관장)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도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생 략)	제5조 (공무원) (현행과 같음)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관장은 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의한 사용료와 기술교육 또는 기타 교육시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하는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의거 시설물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술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수강하고자하는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여성회관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와 기술교육, 전문교육시에는 별표 2의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한다.

현 행	개 정
<p>제7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에 있어서 강당과 회의실에 한하며 동일 단체에 대하여는 월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공공단체</li> <li>2. 여성 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li> <li>3. 요구호 대상자</li> <li>4.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li> </ol>	<p>③ 제2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미리납부하여야 하며, <u>기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u></p> <p>④ 시설사용의 경우 부득이 사용자가 형편에 의거 날짜와 시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야 한다.</p> <p>제7조(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강당, 강의실 및 기타시설물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면제할수있다.</p> <p>② 전문교육의 수강료 면제는 도여성회관 교육계획에의한 교육에 한하며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동일기관·단체에 대하여 월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수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li> <li>2.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시</li> <li>3.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 모자세대</li> </ol>
<p>제8조 (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수있다</p> <p>② (생 략) &lt;신설&gt;</p>	<p>제8조 (위탁관리) ① ----- ----- 일부를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 (강사초빙) (생 략)</p>	<p>제9조 (위탁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장은 각급 공공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등에서 요구하는 과목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수 있다.</li> <li>② 제1항의 위탁교육신청은 별지3호 서식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별표3의 기준에 의한 요금을 징수한다.</li> </ol>
<p>제10조 (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 (강사초빙) (현행과 같음)</p>
	<p>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별표1)				(별표1)																															
<table border="1"> <thead> <tr> <th>사 용 구 분</th><th>기 준</th><th>금 액</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1. 평 일</td><td>1시간</td><td>9,000원</td><td>1시간초과시에는 매30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td></tr> <tr> <td>2. 토 요 일 및 공휴일</td><td>1시간</td><td>10,000원</td><td>상 등</td></tr> </tbody> </table>				사 용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평 일	1시간	9,000원	1시간초과시에는 매30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2. 토 요 일 및 공휴일	1시간	10,000원	상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시설</th><th>기 준</th><th>금 액</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대 강 당</td><td>1회(2시간)</td><td>50,000원</td><td>매시간초과마다 기준요금의 20%가산</td></tr> <tr> <td>강 의 실</td><td>"</td><td>20,000원</td><td>토일공휴일및야간은 기준요금의 20%가산</td></tr> <tr> <td>예 절 실</td><td>"</td><td>30,000원</td><td>냉난방비 사용시 요금별도 징수</td></tr> </tbody> </table>				대상시설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2시간)	50,000원	매시간초과마다 기준요금의 20%가산	강 의 실	"	20,000원	토일공휴일및야간은 기준요금의 20%가산	예 절 실	"	30,000원	냉난방비 사용시 요금별도 징수
사 용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평 일	1시간	9,000원	1시간초과시에는 매30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2. 토 요 일 및 공휴일	1시간	10,000원	상 등																																
대상시설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2시간)	50,000원	매시간초과마다 기준요금의 20%가산																																
강 의 실	"	20,000원	토일공휴일및야간은 기준요금의 20%가산																																
예 절 실	"	30,000원	냉난방비 사용시 요금별도 징수																																
(별표2) 수 강 료				(별표2) 수 강 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육구분</th><th>기 준</th><th>금 액</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1. 기술교육</td><td>1인1월</td><td>3,000원</td><td>·월 20일이상(1일 2시간이상) ·영세민 면제</td></tr> <tr> <td>2. 기타교육</td><td>1인1월</td><td>5,000원</td><td>·월4일이상(1일 1시간이상)</td></tr> </tbody> </table>				교육구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기술교육	1인1월	3,000원	·월 20일이상(1일 2시간이상) ·영세민 면제	2. 기타교육	1인1월	5,000원	·월4일이상(1일 1시간이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기 준</th><th>금 액</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기술교육</td><td>1인, 1월</td><td>10,000원</td><td>·영세모자세대, 영세민 면제 ·교육과정(기간)별 수강료 일시불로 선납</td></tr> <tr> <td>전문교육</td><td>1인, 1주 (4시간) 2주 (8시간)</td><td>20,000원 30,000원</td><td>·여성회관 교육계획 에의한 교육은 수강료 면제</td></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교육	1인, 1월	10,000원	·영세모자세대, 영세민 면제 ·교육과정(기간)별 수강료 일시불로 선납	전문교육	1인, 1주 (4시간) 2주 (8시간)	20,000원 30,000원	·여성회관 교육계획 에의한 교육은 수강료 면제				
교육구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기술교육	1인1월	3,000원	·월 20일이상(1일 2시간이상) ·영세민 면제																																
2. 기타교육	1인1월	5,000원	·월4일이상(1일 1시간이상)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교육	1인, 1월	10,000원	·영세모자세대, 영세민 면제 ·교육과정(기간)별 수강료 일시불로 선납																																
전문교육	1인, 1주 (4시간) 2주 (8시간)	20,000원 30,000원	·여성회관 교육계획 에의한 교육은 수강료 면제																																
(별표3) 위탁 교육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기준(1인당)</th><th colspan="2">금 액</th><th rowspan="2">비 고</th></tr> <tr> <th>단 체</th><th>개인</th></tr> </thead> <tbody> <tr> <td>교육비</td><td>1주(8시간) 2주(12 " ) 3주(18 " )</td><td>30-50천원 50-70 "  70-90 "</td><td>40-50 60-70 80-90</td><td>·단체: 30인 이상 ·시설사용료, 교재비 강사료 식비포함</td></tr> </tbody> </table>				구 분	기준(1인당)	금 액		비 고	단 체	개인	교육비	1주(8시간) 2주(12 " ) 3주(18 " )	30-50천원 50-70 " 70-90 "	40-50 60-70 80-90	·단체: 30인 이상 ·시설사용료, 교재비 강사료 식비포함																
구 분	기준(1인당)	금 액		비 고																															
		단 체	개인																																
교육비	1주(8시간) 2주(12 " ) 3주(18 " )	30-50천원 50-70 " 70-90 "	40-50 60-70 80-90	·단체: 30인 이상 ·시설사용료, 교재비 강사료 식비포함																															